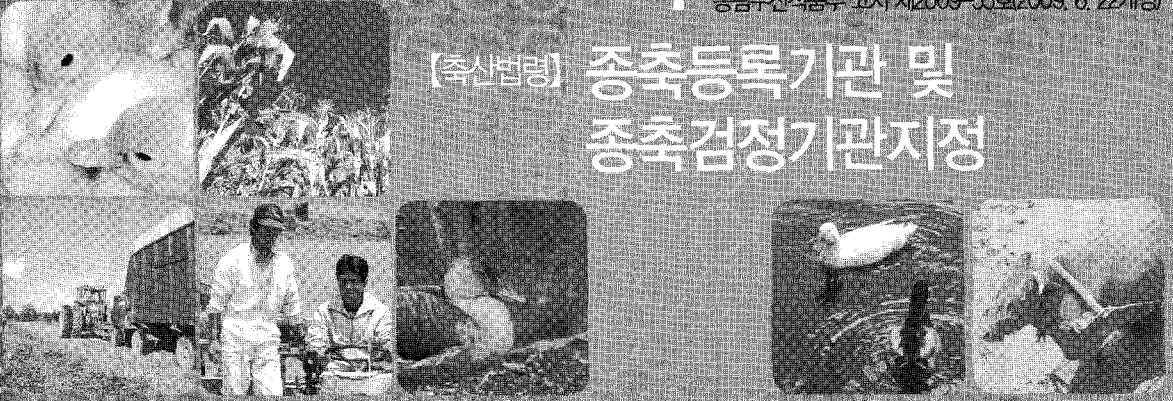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55호(2009. 6. 22개정)

[축산법령]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지정



1. 종축등록기관

축종별	지정기관
한우, 젖소, 육우, 돼지, 토끼	한국종축개량협회
말(제주마 제외)	한국마사회
제주마	제주도축산진흥원

2. 가족개량기관

축종	지정기관
한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젖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육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돼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대한양계협회
오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한국오리협회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